##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15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권영세·강대식·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진 · 김 건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유한홍 · 이달희 · 이만희

이상회·이성권·이양수 이인선·이종배·이종욱 이철규·이헌승·인요한 임이자·임종득·장동혁 정동만·정성국·정연욱 정점식·정희용·조경태 조배숙·조승환·조은희 조정훈·조지연·주진우 주호영·진종오·최보윤 최수진·최은석·최형두 추경호·한기호·한지아 의원(10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임.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 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생존 배우자도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0조).

#### 법률 제 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상속인"을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를 "(배우자가 상속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시되어"를 "개시되는 경우로서"로,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를 "금액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상속인"을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를 "피상속인의"로,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는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를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이나 수유자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	
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	
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1
피상속인이 <u>상속인</u> 에게 증여	<u>상속인(배우자는</u>
한 재산가액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	
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	
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	
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	

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한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한도로한다.

- 1. ~ 3. (생략)
- ② ~ ⑩ (생 략)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 저의 사망으로 상속이 <u>개시되어</u>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 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u>한도금액 = (A - B + C) × D - E</u>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 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배우자
가 상속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세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개시되
 는 경우로서
 금액은
<del></del>
•

<삭 제>

- D: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 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

   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② ~ ④ (생 략)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 기 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합산하여 공제한다.

- 1. ~ 3. (생략)
- 4. <u>상속인</u>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

<u>&lt;삭 제&gt;</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u>-</u>
<u>.</u>
· 1. ~ 3. (현행과 같음)
4. <u>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u> -

- 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②·③ (생 략) 제21조(일괄공제) ① (생 략)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 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 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 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 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 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 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 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일괄공제) ① (현행과 같				
승)				
② 피상속인의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 </u>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제22 <u>年(日명</u> 제건 경투 6세) ①				
<u>배우자가 상속받는</u>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는 제외한				
다. 이하				
 1.·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돝듬) ② (현행과 같음)				
⑷(セッサ 乍日)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u>상속재산</u>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 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② (생략)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 내에 <u>상속인이나 수유자의</u> 사 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 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u>상속재</u>
산(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 ①
<u>상</u> 속인(배우자는 제외한
다)이나 수유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